

고성군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 (의안번호 제53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1999. 3. 10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	1999. 3. 13	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	1999. 3. 25	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,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·운영하는 협의회로서
-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('98.2.6)에 따라 “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”이 공포('98.2.24 법률 제5516호)되어 법에서의 위임사항을 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설립기관의 범위(안 제2조)
- 협의회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(안 제3조)
- 협의회설립(안 제4조)
-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.
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, 고충처리 등으로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고 또한 주요부서 핵심공무원(인사, 예산, 경리 등)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협의회외 기본 취지목적에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계획 인원은 몇명 정도이며, 향후 운영전망은
- 답 : 정원 606명 (현원 589명) 중 가입대상 계획인원은 335명으로 전체인원의 56.9%이며, 향후 보완조치 등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